[기자간담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故 노수석, 故 전용철 사례를 통해 본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의 현재

일시: 2016 년 10 월 19 일(수요일) 오전 11 시
장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 층 행사장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살인정권규탄 투쟁본부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여는 말

조영선 변호사 (민변 전 사무총장, 백남기 유족측 법률대리인)

과거 국가폭력의 책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 고 노수석 사례 (이덕우ㅣ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당시 노수석 유가족 대리인)
- 고 전용철 사례 (박래군ㅣ인권중심 사람 소장, 당시 전용철 범대위 진상조사위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의 전개에서 실종된 국가폭력의 책임

(최은아ㅣ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류은숙ㅣ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노수석 사망과 부검, 그리고 조건부 영장

(이덕우ǁ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당시 노수석 유가족 대리인)

Ⅰ. 노수석 사례

1. 1996. 3. 29. 집회

가. 배경
1996 년 봄 대학 학생운동은 대선자금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전면에 내세웠고 3.29. 서총련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강경 진압하였다. 그 결과 연세대 법대 2 학년생 노수석이 사망하였다.

(1) 대선자금 공개
1995 년 하반기 5.18 학살책임자 처벌 정국
서울중앙지검 1995 년 7 월 18 일 전두환 노태우 등 5.18 피고소, 고발인 58 명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5.18 특별법 제정' 운동 -
10 월 26 일 학생.노동.농민.여성.재야.법조.종교계 등 279 개 단체 '5.18 범국민 비상대책위' 구성
10 월 19 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4 천억원설 제기
10 월 27 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1992 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 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노 씨가 한 의원을 통해 김영삼 후보에게 수천억원을 제공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 11 월 24 일 '5·18 특별법 연내 제정 결정 발표,
1995 년 12 월 21 일 제정
대선자금 공개 거부

(2) 교육재정확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 1991 년 이후 연평균 15% 6 년 만에 두 배 이상
1992 년 각 대선 후보들 '교육재정 5% 확보' 공약 제시
1996 년 겨울,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이 대거 인상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담합의혹'

등록금 인상 반대 –
‘교육재정 5% 확보 공약 이행’, ‘국가 교육재정 확충’, ‘**불법 대선자금 환수를 통한 교육재정 충당**’

나. 시위 및 진압

3. 29. 1,500 여명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연세대생 종묘공원 이동–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
오후 5 시 30 서울 종묘공원 일대 “김영삼의 ‘92 년 대선자금 공개하라”, “부패정치 청산하자”, “교육재정 확보하라” 구호 시위
경찰은 56 개 중대 6,000 여명 출동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 구사
지휘부 직접 CCTV 로 학생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백골단 등에게 명령
경찰 시위 시작 10 분만에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며 1 차 진압 시도
시위대 동대문 방향으로 쫓기다 경찰의 추격으로 을지로 방향으로 밀림
경찰 종로 3 가 → 동대문 → 을지로로 쫓기는 학생 대열을 맹추격하며 강경한 진압작전 학생들이 동대문을 돌아 을지로 6 가에서 5 가 방향으로 뛰어갈 때 잠복 중이던 기동타격대(백골단)와 전투경찰이 시위 대열을 급습

2. 노수석 사망

종묘공원에서 을지로로 뛰면서 000(연세대 법학과 1 학년)에게 “아까 맞았어, 아까 맞았어”라고 2~3 차례 말함.
을지로 6 가 입구 ***(연세대 법학과 1 학년)에게 “나 쥐났어”라고 해 부축.
을지로 6 가에서 오장동 로터리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가게 같은데 들어가자”고 하여 인쇄소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경찰의 기습공격을 받고 ***은 연행됨.

천지호텔 앞에서 대현문화사까지 목격자 찾지 못함

대현문화사에 A(한양대 3 학년), B(한양대 1 학년)가 뛰어 들어가 인쇄기 뒤에 숨고 이어 노수석이 들어감 뒤이어 C(한양대 경영학과 2 학년)과 D(한양대 경영학과 1 학년)가 따라 들어옴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 A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옆을 지나다 다리를 건드렸고 이때 노수석은 ‘아악’하는 비명을 지름
전경들에 쫓겨 대현문화사로 들어가려던 E(연세대 사회학과 2 학년) 전경에게 붙잡히고 인쇄소 주인 000 씨가 항의하며 전투경찰을 인쇄소 밖으로 밀어냄
잠시 후 인쇄소 안의 학생들 노수석의 몸을 주무르는데 전경들이 대현문화사로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함
연행당하던 학생 B 가 노수석이 위독하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묵살
학생들이 모두 끌려나간 뒤 인쇄소 여주인 ***씨가 노수석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간부급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구호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씨가 지나가던 학생 F(고려대 경영학과 2 학년) 등 2 명에게 도움 요청 학생들과 골목 주민들이 노수석 열사에게 인공호흡을 실시
인쇄소 주인 000 씨가 119 에 신고 오후 6 시 47 분쯤 119 구급차가 도착
조덕연 국립의료원장 –
"6 시 55 분 도착한 직후 초진 결과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 및 심장박동이 멈춰있었다" 면서 "오후 7 시 35 분까지 심장마사지와 전기 충격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사망으로 최종 확인됐다"

'고 노수석 군 살인규명 및 사태해결을 위한 임시대책위원회' 구성

시체 검안 – 경찰과 대책위 대표 참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외상 발견하지 못함

입회 변호사 –
"가슴에 가로 5cm, 세로 5cm, 두께 0.5cm 의 멍과 명치 위에 가로 0.5cm, 세로 2cm 의 멍이 있으며 오른쪽 손가락 4 개와 왼쪽 무릎에 넘어질 때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있다"

3 월 30 일 오후 3 시 연세대 송자 총장 및 부총장, 경찰, 유족, 학생대표 회의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부검할 것 등 합의

시신 세브란스병원 이송

3. 부 검

가. 부검 실시

3 월 31 일 오전 10 시 30 분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시진의 지휘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법의학과장 등 4 명이 집도

입회 –
연세대 법의학 조상호 교수, 고려대 법의학 황적준 교수, 국립의료원 이승철 신경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 양길승, 노수석의 당숙인 의사 노광을, 변호사 이덕우, 학생대표와 유족 6 명, 한겨레와 연합통신 기자 2 명

부검 결과, 전체 7 군데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심장이 다소 무겁고 비대확장되어 있었음. 부검의들은 외상이 있으나 직접 사인으로 보이지 않고 심장이 비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심근증이나 심근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뤄 직접 사인을 내인성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 양길승 박사는 "노 군과 같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청년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심장 이상 증세만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 설명했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진 외부적 충격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덧붙였다.

나. 부검 후 공방 및 장례

전국연합, 민변 등 23 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공권력을 남용해 사망사건이 일어나게 한 과잉진압 책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서총련-
"노수석 열사가 심근증이나 심근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오는 9~10 일에 노수석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맹휴업을 벌이겠다"

노수석 부친 4 월 4 일 장례 결정 학생들 장례연기 호소 - 장례연기

4 월 8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노수석 부친 노봉구씨를 대리해 박일룡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기동대장, 시위진압 지휘중대장 등을 고소
"박 경찰청장 등은 지난 달 29 일 대선자금 공개와 등록금 부당인상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모두 붙잡도록 지시하고 폭력진으로 노수석 사망에 이르게 했다"

4 월 10 일 장례식

다. 불기소처분

국과수 부검감정서 4.9. 작성 4 월 13 일 서울경찰청 발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를 인용 최종사인을 심장이상에 의한 돌연사

서울중앙지검 무혐의처분 서울고검 1997 년 1 월 항고기각. 무혐의이유 과잉진압 증거 없고 부검결과 심장이상에 의한 돌연사

4. 민사소송과 명예회복

가. 1998 년 2 월 13 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찰 수사기록 입수 증거 제출
과잉진압에 대한 증인진술서, 증언
1999 년 1 월 15 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판결요지- 과잉진압에 대한 원고 증거 모두 배척 증거 부족
부검 결과 밝혀진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
경찰의 구호 요청 무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즉시 구호 조치하였다 하더라도 생존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나. 2 심 (항소심)

추가 증인 2 명 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000 과장 증언-
 심근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비를 맞아 체온이 내려가고 극심한 공포상태에서 전력 질주하였다면 그것이 심근경색(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었을 것 (해산 유도가 아니라 검거를 위한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봉과 방패 등을 사용한 폭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고등법원 화해 권고 - 국가 거부

2000 년 3 월 14 일 항소 기각 판결
판결요지-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만한 구체적인 외상이 없고 가해자가 불분명하다

비판-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준수.
불법집회라도 잔인한 폭력이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 금지
심근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풍물패인 천둥에서 격렬한 활동
병적기록표상 1 급 현역입영대상 다음 해 입영예정
심장병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 하여도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

다. 3 심 상고(법률심)

명백한 경찰 폭력과 과잉진압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법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 사망과 과잉진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 산업재해 등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2000 년 6 월 상고 기각

라.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

검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기존 체제의 한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 인정

Ⅱ. 수사, 재판과 증거

1. 증거

형사절차– 수사 및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

사실인정의 근거 자료 – 증거

증거재판주의
수사에서 부검은 증거 중 하나

부검감정서는 부검의 작성 –
다른 의사가 관여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하여 허위감정서 작성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한 바로 잡기 어려움

노수석 부검의들은 부검감정서에 "심근병증이 있으면 육체적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등 외부 유인이 작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보통 경미한 외부 유인이라면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고, 사건의 개요로 보아 극심한 외부적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감정인들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며 "본건 감정은 주어진 사건개요의 한도 내에서 해부소견을 해석한 것임. 따라사 차후 수사를 통하여 사건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본 감정은 재고 보완될 수 있음"이라 기재

결국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의지 능력

2. 부검

관련 형사소송법

제 222 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 139 조(검증)판례문헌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140 조(검증과 필요한 처분)판례문헌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41 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판례문헌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3 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 126 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영장의 조건

가. 유효설-법원
조건도 영장의 내용이므로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

나. 무효설-검찰
조건은 영장의 내용이 아니므로 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검증영장의 성격으로 보아 강제부검 가능하다

4. 조건의 검토

부검장소-영장의 내용

입회인-선례 있음 영장 내용

동영상촬영-선례 없음

충분한 정보제공-선례 없음

조건부 검증영장발부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므로 무효

5. 종합검토

가. 형사소송법 제 222 조

변사자인가 - 아니다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인가 - 아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검시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단 사체검안을 했다

나. 형사소송법 제 139 조

헌법 및 민형사법 등 실정법에서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라는 규정은 유일
사체에 대한 예의
사실의 발견에 필요한 때인가
사체에 대한 예의와 유족에 대한 통지 규정과 필요한 때라는 규정을 종합하면 검증 특히 사체해부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인이 명백하여 사체해부가 필요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법원은 위법.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참고 입영영장 회수 8 월 7 일, 1969 년 8 월 7 일 중앙일보"
【대구】경북 병무청에서 3 선개헌 반대 경북대학교 데모 주동학생 홍윤순군(물리과 4 년)등 7 명에게 발부한 징집영장을 6 일밤부터 8 일상오까지 회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무청은 이번 발부된 징집 영장이 사무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각동 면직원들이 이들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장 회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사망진단서

대한의사협회 발간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통계청 사망진단서 발급안내

서울대 병원 의사 백선하가 할 일 사망진단서 재발급
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 종류: 기타(경찰 살수차의 직사)

Ⅲ. 결론

필요한 경우 부검할 수 있다.

부검하지 않으려고 하다 어쩔 수 없이 부검한 사례 –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 년 치안본부장 강민창 (부검 감정결과 조작 의도)

허위감정 – 1991 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과수 문서감정실장 김형영 –24 년 만에 재심 무죄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전 사후 불복 구제제도
검증영장 – 사전 심사나 사후 불복 구제제도 없음–입법 미비
대법원 압수수색검증영장 항고(–법원의 결정), 준항고(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 대상도 아님–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금지 –재판 아니다

10. 9.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법원 스스로 영장 취소하고 회수
헌재 가처분 및 위헌 결정

전문가(의사 법조인)의 지식 양심 용기가 수술대에 올랐다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과 경찰의 대응

박래군ǁ인권중심 사람 소장, 당시 전용철 범대위 진상조사위원

1.

2005 년 11 월 15 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가하였던 전용철 농민은 대회 시작 전에는 이상증세를 보인 바 없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에 참석하였고, 시위 진압과정에서도 별 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다가 시위가 끝나고 관광버스로 충남 보령의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운전자 뒤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의식을 거의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식사도 하지 못하였으며, 버스 안에 구토까지 했다. 11 월 24 일 이상증세를 보여서 병원을 후송되었고, 충남대병원에서 두 차례의 뇌수술을 하였으나 가망이 없어서 퇴원하여 집으로 오던 중에 사망하였다.

2.

보령경찰서장의 의뢰로 11 월 25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소는 부검을 실시하고, 전 씨의 사인에 대해 두부손상(두개골골절, 외상성 뇌실질내출형, 뇌좌상, 경막하출혈 등)이고, 두부손상이 동측충격 손상보다는 대측충격손상이라는 결론을 내렸

다. 또한 전씨 간경화 증세를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부검결과가 나오자 충남경찰청은 사망한 전 씨가 집에서 쓰러져 뇌를 다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전씨가 집에서 쓰러진 적이 없음이 강력히 대두되자 이를 슬그머니 부인하였다.

3.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당시 서울 1001 기동대 등에 의해서 방패와 곤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강경진압으로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증언하였으나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에서 폭력진압이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전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11 월 27 일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가 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누워 있던 전 씨를 시위참가자 다수가 사지를 들고 후송하는 사진을 찾아내 당시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전용철 범대위)에 제공하였고, 전용철 범대위는 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부검결과를 인용하면서 전씨가 간경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폭력진압을 부인하였다.

4.
이에 12 월 1 일 전용철 범대위는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양길승 녹색병원장이 단장으로 민변의 김희수 변호사 등 7 명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 산하에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을 주축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장에 내려간 조사단은 경찰이 초기부터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지병이 있었는지, 집에서 쓰러지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음이 밝혀냈다. 또한 전용철 농민의 당시 동선을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폭력적인 진압이 6 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럴 때마다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부상을 당하여 실명위기에 있거나 치아를 손상당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전씨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구체적으로 경찰의 방패에 의해서 머리 뒤를 가격당하고 쓰러진 진술도 확보하였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서 12 월 9 일 1 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5.
12 월 13 일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가 전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자 경찰은 당시 현장 지휘를 했던 서울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경무관)을 직위해제하였다. 그 후 12 월 18 일 농민시위에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홍덕표 농민이 사망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농민 사망과 관련한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시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 월 20 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농민단체 등이 진정한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12 월 26 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폭행에 의해 두 농민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경찰에 권고했다.

6.

12 월 27 일,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두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강변하였다. 그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사퇴를 거부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12 월 29 일 사퇴하였다. 그는 사퇴하면서도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7.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장례가 12 월 31 일 치러졌다. 이후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직위해제 됐던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은 수개월 뒤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약 3 년이 지난 2008 년 10 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소 중지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처벌된 경찰 관계자는 없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의 전개에서 실종된 '국가폭력'의 책임

기자간담회 준비팀

1. 사건 발생 _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2015. 11.13. 사전 조치로서 검경 등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법무부 등 5 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 발표.
- 11. 14. 경찰,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100%동원하여 248 개중대, 2 만여명을 서울 도심으로 집중. 경찰, 19 대 살수차 배치하고 차벽 설치. 202 톤의 물을 사용하여 살수.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백남기 님이 20 여 초간 물대포를 맞고 쓰러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 잃음.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혜화경찰서장에게 연락. 혜화경찰서장,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이 백남기 님 수술 시작. 당시 서울대병원에는 뇌출혈 전문인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음. 당일 신경외과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돼 있음.
-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 지속.

➔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중총궐기를 진압하기 위해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뇌손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해매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은 과잉진압이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당직 의료진이 거의 뇌사상태로 판단하고 수술이 무의미하다고 했으나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은 수술을 강행하였다.

2. 사건 초기_민중총궐기는 불법폭력시위이며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다

- 11.15.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집회가) 불법폭력성이 과했기 때문에 경찰도 강도있게 대응할 것 뿐” 이라고 밝혀.
- 11.16.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백 씨 사고는 우연찮게 쏟아붓다보니 불상사가 생긴 것" "경찰 살수 전반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밝혀.
- 11.23.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국회 안행위에서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 경찰은 민중총궐기로 131 명의 경찰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 착수. 12.6. "소요죄 적용 검토 등 엄벌 방침" 12 월 10 일 한상균 위원장 체포. 집회 참가자 1,0970 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
- 2015.11.18. 가족 등, 강신명과 구은수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2.17. 고발인조사 이후 피고발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다가 2016.9.12 국회 안행위 백남기 청문회 앞두고 진행)
- 경찰, 백남기 농민과 관련 청문감사 벌였다고 밝혔으나 내용과 결론은 비공개. (2016.9.12. 백남기 국회 안행위 청문회에서 이규문 청문감사담당관은 "보고서는 작성된 것이 없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인만큼 청문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진술)
- 2015. 12.25. 현장 책임자 신윤균 제 4 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진압 책임자 이중구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조현배 정보국장은 경남청장으로, 정용선 수사국장은 경기청장으로 영전. 서울청 경비부장과 교통부장도 승진
- 2016.2.1. 강신명 전 경찰청장,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과 관련해) 11 월 14 일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폭행 손괴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집회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혀.
- 2.16. 경찰, 3 억 8 천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제출.

➔ 경찰,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이며 조직된 ‘공식 부인’ 전략을 취했다. 경찰은 일관되게 국가폭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은

유감이지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경찰 스스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중총궐기 주최단체나 시민들을 '폭도'나 '테러범'과 등치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중총궐기는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폭도들의 만행'이고 '테러 범죄'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보수언론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앞 다투어 보도하자, 민중총궐기를 하면서 주장하였던 사회적인 의제들은 사라지고,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이미지만이 확대재생산 되었다. 자연스레 폭도나 테러범으로 이미지화 된 시민들의 주장이나 증언은 신뢰성, 객관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총선 이후 청문회 _물대포 살수는 위법이며 경찰의 잘못이라는 점이 차차 확인되어가다

- 2016.7.4. 한상균 1 심 선고.1 심 재판부는 판결법했문에서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백남기 님 관련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 인정.
- 2016.8.23. 강신명 임기 마치고 경찰청장에서 퇴임. 이철성 경찰청장으로 취임. (*강신명, 구은수, 이철성 모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출신)
- 2016.9.12. 국회 안행위 백남기 청문회 실시.
  - 충남 9 호차에 있던 경찰들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밝혀.
  - 또한 충남 9 호차 CCTV 영상 확인 결과 모두 7 차례 물대포 발사 중 곡사 살수는 없었고, 거리조절도 되지 않아. 당시 조작 경찰관들은 "CCTV 로 밖의 상황을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살수차 물줄기에 가려서 시야가 제한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 했다"는 모순된 진술을 했으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거리 조절도 눈대중으로 하고 수압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을 발로 밟아 수압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 당시 현장책임자인 4 기동단장 신윤균은 "충남 살수차에는 4 기동단망으로 제시시를 받은 제 참모들이 전달해서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들은 4 기동단 무전망을 통해 살수 준비 지시와 살수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본격 살수명령은 누가 내렸는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음. 살수차 운영요원과 4 기동단장 모두 본격살수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인지 하지 못했음.
  - 4 기동단장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구호조치 할 수 없었다"고 밝힘.
  - 강신명 청장은 6 월 29 일 안행위 전체회의 당일 "21 시경 TV 자막으로 인지했다"는 진술을 청문회에서 되풀이 했고, 구은수 역시 9 시경 보고를 받았다고 밝힘.(그러나 최근 드러난 상황속보에 보면 경찰은 20:00 경부터 백남기 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강신명과 구은수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거나, 또는 상황속보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유체역학전문가 "제일 큰 상용차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위력으로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밝혀.
- 강신명 전경찰청장,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사과하겠다"고 말해.

➔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이 실재 물대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드러났다. 경찰은 공권력 사용이 정당했고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했지만 경찰의 살수행위가 처음부터 직사였음이 밝혀졌고 결국 경찰이 <살수차운영지침> 대로 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물론 훈련을 할 때도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경찰들의 초기진술서)를 끝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휘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의 잘못이 확인되었고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음이 점차 드러났다. 경찰에게 '가리고 싶은 진실 혹은 조작된 사실'이 있어 보였다.

4. 백남기 농민 사망 _검경이 앞장서 사인 논란으로 논점 왜곡하며 국가폭력 은폐를 시도하다

- 2016.9.25. 백남기 님 사망. 18:30 경 검찰 및 검시관이 검시 진행.
- 경찰, 위독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24 일부터 병력 배치 등 개입 시작. 부검 주장.
- 9.28. 검경의 부검영장 청구, 기각, 재청구에 서울중앙지법(성창호 판사)이 '조건부 영장' 발부.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9.26.기각 사유)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9.28.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 10.3.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사망진단서는 잘못됐지만 주치의에게 수정 요구할 수 없어"라고 밝혀. 대한의사협회(10.5)는 "'심폐정지'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으로 결정해야. 급성경막하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개념으로 '병사'기재는 잘못 등"의 입장 발표.
- 10.5. 야 3 당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사용함으로써 백 농민을 중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등"에 관한 상설특검안 국회 제출.
- 10.1. 서울 종로경찰서, 유족들이 제기한 영장공개에 대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 사유(조건)부분을 공개하겠다고 결정. 그러나 이자료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부분.
- 10. 6.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민중총궐기 당시) 30 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자료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원래 열람하고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경비부서에서 추후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을 바꿔.
– 10.1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의원, “이용식 건국대 교수는 빨간 우의가 (고인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다"라고 하며 "부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 10.1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서울대병원이 검찰에게 두차례(9 월 6 일/ 9 월 26 일) 압수수색에 응한 사실 밝혀. 두 압수수색 영장 중 9 월 6 일자는 피의자에 강신명, 구은수 경찰관계자 7 명 등이 특정되어 있고 피의사실도 살인미수,경찰관직무집행법 기재되어 있으나 9 월 26 일자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사실도 기타의죄로 바뀜. 이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사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성명불상의 또다른 피해자를 세우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10.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중 당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영상을 느리게 공개. 박의원, "빨간 우의가 주먹을 뻗어서 땅에 딛는다. 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영상만 느리게 플레이 해봐도 빨간 우의가 관련됐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해.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답변.
– 10.18. 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던 민중총궐기 상황보고서(상황속보) 드러나. 14~18 보까지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치료 중”이라는 핵심증거가 담겨. 결국, 경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가 담긴 문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드러나.

➔ 검경은 한 번도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부검을 통해 무엇을 더 밝힐 수 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통해서 새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미 317 일 간의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원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은 없다. 결국 검경은 물대포 살수의 위법성 논란을 부검 필요성 논란으로 대체하면서 국가폭력 은폐를 시도하려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기되는 주장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부검 논란이 유족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해자 수사에 미온했던 검경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다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한단 말인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의 진실 규명은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즉, 유족의 입장 대 검경의 입장을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다.

5. 다시, 우리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자

공안대책협의회, 갑호비상명령, 집회금지,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고수했기에,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만들어갈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경찰 주장대로 설령 진압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진압에 사용한 물대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거나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었기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300 일이 넘도록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숨기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책임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일과 연결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사법적인 판단도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사되는 공권력에게 형사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만들어갈 책임을 부과하자. 물대포를 조작한 경찰들이 있고, 물대포 사용에 대한 최초 명령자와 명령을 전달한 경찰들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창청장, 이철성 현 경찰청장은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위치를 잡고 있다. 지금처럼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을 통해서는 어렵다. 검경은 시위 진압 전 이미 공안대책협의회 열어 협의하는 관계였으며, 부검 영장 발부 등 사망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금까지 명백한 국가폭력을 외면하고 부정해온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필수적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정의를 세우는 일과 단짝 친구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은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와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인권피해자의 권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 고 백남기 님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공권력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행사돼야만 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권보장은 정치의 본질이다.
국가폭력은 1) 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인권보장으로부터 '통치자에 대한 보호'로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2) 권력이 맘에 들지 않은 시민을 겨냥하여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시민의 저항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 정치의 왜곡에 저항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제압하려 드는 것이다. 3) 인권에는 구조적인 맥락과 조건을 성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그런 문제들과 비교할 때 국가폭력은, 특히 고 백남기 님에 대한 물대포 치사 사건의 경우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폭력이다. 신체적 안전 보장을 유린한 부당한 폭력이고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다. 4) 국가폭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틀에 따라 시민을 구분하고 갈라치기하는 것이다. 즉 정권의 안위와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시민을 '적' 또는 '비인간'으로 갈라서 분류하고 처우하는 것이다. 물대포처럼 가시적이고 확실한 폭력만이 아니라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이야말로 근원적인 국가폭력이다. 5)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것, 엘리트들은 철통같이 보호하되, 시민(특히 가난한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공권력/국가 폭력의 특징이다.

2. 인권 피해자란

인권 피해자란 국제 및 국내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에 침해를 입은 사람이다. 인권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의 고통, 차별과 배제, 착취를 경험한다. 이런 피해자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피해당사자와 가족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

3. 인권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존중의 원칙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기 이전에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권에 기초해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들은 단절적이고 분산적으로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상호 연관된 조치를 필수로 한다. 피해자는 필수적인 조치들 간에 거래나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2) 피해에 대한 인정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사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진실규명, 재판,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검열(피해자 '다움' 의 강요), 피해 사실에 대한 부인('그런 일 없었다' 고 대놓고 하는 부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다' 란 식으로 피해자의 순수성을 물고 늘어지는 부인, 그런 사건이 있긴 했지만 '곡해한 것' 이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부인)은 피해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거듭되는 '가해' 이자 '폭력' 이다. 피해자를 오히려 표적 삼는 것은 공감이 아닌 잔혹함의 표현이며 가장 악질적인 피해의 확대재생산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사죄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다. 명백한 과오와 범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내키지 않는다' 거나 '싫다' 고 도리질하고 내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인 사과/사죄는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 대한 귀결로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런 직분과 직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를 져야 한다.

3)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피해자는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사건의 이유와 구체적 상황, 그리고 누가 그 일에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알 권리를 포함한다.

4)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피해자는 정의실현에 앞서 섣불리 화해와 용서와 망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구/절차의 구성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해자와 책임자는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은 근절돼야 한다. 피해자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5) 배상에 대한 권리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은 생명 침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용□교육 등 기회의 상실, 물질적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한 소득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 피해자가 고통 받은 모든 위해를 포괄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듯이 배상은 원상회복, 금전적 배상, 재활조치, 만족,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배상은 진실규명과 거래될 수 없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의 인정 및 정의실현과 연결돼야 의미가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금전적 배상은 배상이라 할 수 없다. 배상은 피해자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사과의 증거이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증표이다.

6)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은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되풀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확실한 구제조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통감각을 확인하는 길이며, 이 공통감각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첨부: 근거가 되는 국제인권규범>

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UN General Assembly 2005.12.16. A/60/509/Add.1)

I.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
1. 개별적인 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확보하고,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에서 유래한다.
(a)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b) 국제관습법
(c) 각국의 국내법

V.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8. 이 문서의 취지상 피해자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
9. 위반 행위 가해자의 확인, 체포, 기소, 유죄 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VI. 피해자의 처우
10. 피해자는 인도성 그리고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정의와 배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다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VII. 구제 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1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a)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
(b)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c) 위반 행위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

VIII. 재판에 대한 접근
12.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는 국제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를 보유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 수단들은 행정 단체나 여타 단체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치, 양식, 절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재판 접근권과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절차를 확보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공적 그리고 사적인 장치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전판하는 것
(b)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여타 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그 대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그들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고, 복수와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증인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c) 재판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d) 피해자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외교적, 영사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IX. 피해에 대한 배상
18.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개별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금전 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을 정한 원칙 제 19 조 내지 제 23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19. 원상회복은 가능한 한 피해자를…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리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22.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 부분을 포함한다.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e)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f) 위반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23. 재발 방지 보증은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들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X. 침해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
24.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대표들은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들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원인과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 행위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를 보유한다.

2. 유엔 인권이사회 E/CN.4/2005/102/Add.1 (2005.2.8.)
불처벌 투쟁 원칙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A. 불처벌(impunity)
'불처벌' 은 기소, 체포, 심리 그리고 유죄인 경우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 추궁(형사, 민사, 행정 또는 권리제한이든 불문하고)이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원칙 4. 피해자의 알 권리
일체의 법적인 재판절차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사망 또는 실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IV. 배상에 대한 권리/재발 방지보장에 대한 권리
A. 배상에 대한 권리
원칙 31. 배상할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어떠한 인권침해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수취인 측에서 배상에 대한 권리를 일으킨다. 이 권리는 국가 측의 배상할 의무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추구할 가능성을 만들 의무를 함축한다.

원칙 32. 배상 절차
모든 피해자는 형사, 민사, 행정 또는 징계 절차의 형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는 위협과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배상은 또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기반하고, 국가 또는 국제적 자원을 재원으로 삼고, 개인들과 공동체에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여타 부문은 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

배상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적용가능한 국제적 및 지역적 절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원칙 34. 배상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배상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가 고통 받은 모든 위해를 포괄해야 한다. 국제법이 제시하듯이 원상회복, 보상, 재활, 만족(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3.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증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들 (Rep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요지: 단절적이고 흩어진 조치가 아닌 '포괄적' 이고 '상호연관' 된 접근을 강조, 즉 핵심 4 요소, '진실 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이 맞물려야(쌍방향의 관계) 의미가 있지, 다른 요소가 빠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추진되면 의미가 없다. 각 조치가 서로 간에 거래돼서는 안된다. 이 4 요소의 목표는 중간 목표(피해자에 대한 인정, 신뢰의 회복과 증진), 최종 목표(화해에 기여, 법의 지배 강화)

A/HRC/21/46, 2012.8.9.
54 항. 피해자 중심의 접근; 피해자의 의미있는 참여의 보장
55 항. 화해는 정의의 대체물로 간주될 수 없다. 흔히 피해자에게 용서하고 잊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9 항. 피해자의 첫째 요구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의 획득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피해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즉 이런 인정은 규범에 호소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피해자가 권리의 보유자란 걸 인정하는 것이다. 단지 공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권리에 기초해서 요구를 할 권리를 피해자가 가졌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37 항. 화해가 정의실현의 대안은 아니다.
38 항. 화해는 최소한, 개인들이 서로를 동등한 권리의 보유자로서 재차 또는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조건.

피해자-중심의 접근
54 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신뢰의 배양, 민주적인 법의 지배 강화, 이들 중 어느 것도 피해자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생길수가 없다. 의미있는 참여란...진실규명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고 사실을 보고하고 발생한 침해의 원인을 보고하길 원하는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진실규명은 시민사회(특히 피해자 조직)가 진실 위원회 구성에서 충분히 대표될 때 정의로운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배상은 피해자와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배상계획의 디자인에 연루되었을 때만 성공적일 수 있다. 배상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하고 권리 보유자로서의 피해자 인정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발방지의 보장, 제도 및 인적 개혁에는 국민과 특히 피해자의 견해에 입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55 항. 화해는 정의의 대체물로 간주될 수 없다. 흔히 피해자에게 용서하고 잊으라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A/HRC/27/56, 2014.8.27.
115 항. 피해자의 참여(기소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는 피해자를 권리보유자로서 인정한다는 함의다.

A/69/518, 2014.10.14.
17 항. 배상을 할 국가의 의무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다음을 포괄한다: 공적인 조사와 기소; 법적 개혁; 자유, 고용 또는 재산의 복구; 의료적 돌봄; 공적인 사과의 표현;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식적 인정

4. 유엔사무총장, 진실□정의□배상, 재발방지 보증에 관하여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A/69/518, 2014.10.14.)

요지: 피해자 배상문제에 집중한 보고서: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전 사회가 느낄 영향을 끼친다. 불신, 제도적 취약성, 시민권의 개념과 실천이 실패한 유산이다. 배상은 '책임'의 인정, 여타 정의의 추구와 연결돼야 의미가 있다. 물질적 배상 또는 상징적 배상, 개인적 배상 또는 집단적 배상간에 구별이 있다. 배상은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배상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정치적 요인이 강력한 결정요소이다. 권리를 만족시키려는 헌신이 경제적 풍요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다. 배상 프로그램의 중심에 인권이 놓여야만 한다.

4 항. 기껏해야, 배상 프로그램이 소송과 결합된 어려움과 비용을 방지하려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의 문제를 언급
9 항. 배상은 피해자에게 인정(recognition)을 제공한다. 피해자로서만의 인정이 아니라 권리 보유자로서의 인정. 배상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 법의 재배의 강화에 기여, 사회적 통합 또는 화해를 고취할 수 있다. 배상의 이런 목표들은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그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즉, 배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10 항. 포괄적인 정책의 일환이 배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배상의 구별된 역할을 가려서는 안된다. 배상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위해 구상된 유일한 조치이다. 나머지는 전체로서의 사회를 위한 것이지만, 배상은 명백하게 우선적으로 피해자편에서 실행되는 노력이다.
11 항. 이런 배경을 기초로, 3 가지 경고점이 있다. 첫째, 배상은 단지 거래(교환) 메커니즘이 아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배상으로 간주되려면,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과 연결돼야만 한다. 둘째, 배상은 피해자에게 여러 정의를 위한 시도들 중에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가령 가해자를 불처벌하도록 피해자에게 더 관대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배상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위해 구상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피해자에게만 배상 프로그램이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 배상이 사법적 조치인 한, 그것은 일반 규범에 기초하며 그것의 혜

택은 중요한 긍정적인 확산 효과를 갖는다. 가령 권리 침해를 진지하게 다루는 법적 의무 실현의 사례가 된다.
15 항.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를 담은 국제법; 세계인권선언 제 8 조, 시민.정치적권리규약 제 2 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6 조, 고문방지협약 제 14 조, 아동권리협약 제 39 조...
16 항.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1. 배상에 대한 언급
36 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특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가령 트라우마를 다루는 서비스
37 항. 재활은 피해자의 건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소위 피해자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라 할 것의 회복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